

하남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0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월 일

발의자 : 금광연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고독사를 맞이하는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음.
- 나.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 목적(안 제1조)
- 나.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등(안 제 3조~4조)
- 다. 웰다잉(well-dying) 인식조사 및 문화 조성 사업(안 제5조)
- 라.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보급·확대(안 제6조)
- 마.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지원 등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하남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”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2. “엔딩노트(Ending Note)”란 자신의 가족관계, 병력, 장례절차, 재산관계,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.
3. “유품정리”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,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하남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(이하 “노령자 등”이라 한다)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
2. 노령자 등의 유언장,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3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
4.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5.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)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,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
2.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
3.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
4.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
5.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
6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업

제6조(웰다잉 문화 보급·확대)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·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우선적으로 하남시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시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임종준비교육 등) ①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) 시장은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
2.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

3.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
4.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
5.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
6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제11조(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)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·완화의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비밀의 유지)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연명의료결정법)

[시행 2024. 6. 14.] [법률 제1946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호스피스·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9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.

2 「경기도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1. 1. 8.] [경기도조례 제6877호, 2021. 1. 8., 전부개정]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·군,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
2. 임종 준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
3.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육성 사업